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05월 13일

월계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형	박 *형 1996-01-10	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 (월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5-04